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9
----------	-----

2021. 1. 28.(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월 22일

-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선배 의원)

가.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 5. 2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984. 2. 28.)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1985년 3월 2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충북지부 형식으로 창립됨.
-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시행일 1998. 7. 1.)에 따라 시·도협회를 지부 형식이 아닌 별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1998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개요

○ 설립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위 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 충북사회복지센터 3층

○ 성 격: 사회복지법인으로 민간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개인을 포괄하여 종교,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연계·협력을 통해 민간 중심의 지역 복지서비스 지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

○ 미션·비전

- 미션: 충청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 비전: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복지모델의 표준

○ 주요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
- 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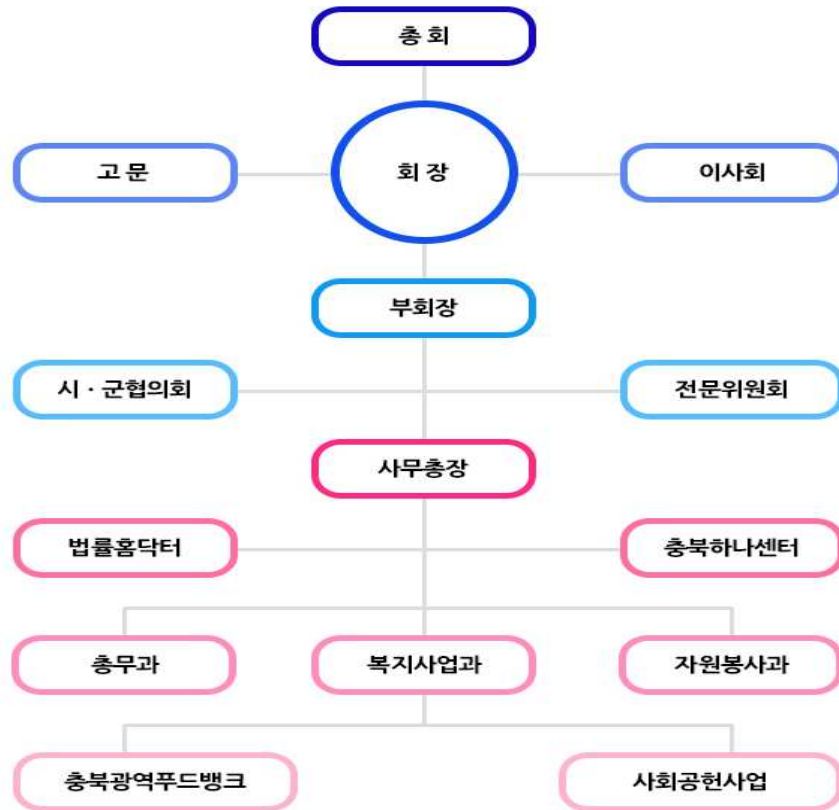
○ 주요 지원·위탁사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충북광역푸드뱅크 사업
- 통일부 지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 운영

○ 예산(2021년 기준)

- 총사업비: 291,642천원(도비)
- 산출근거
 - 인건비: 219,965천원(4명, 평균 4,582,604원)
 - 운영비: 11,377천원(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사업비: 60,300천원(조사연구, 사회복지정보화, 출판홍보, 법률홈닥터 사업 등)

○ 조직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률에서 정한 사업 외에도,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협력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함.
 - 특히, 시·군 협의회 간의 협력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사업은 협의회가 복지영역에서 민간을 대표하는 공식적 조직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이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음. 또한 본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요구된 바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안 제4조는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함.
- 제2항의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바,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법령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어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기에 조문을 두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타당할 수 있으나, 안 제5조의 보조금의 준용 규정과 연계해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확히 자치법규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수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안 제5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 및 운영비로 지원된 보조금이 적합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민간 복지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민간 복지 영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또한, 본 조례안은 관련 기관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조례안 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9
----------	-----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발의자 : 장선배,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허창원
송미애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 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4호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도지사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관리,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임.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 조례안 제4조(보조금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필요 비용은 '21년 운영비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을 (2.8%) 고려하여 산출
 -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비용은 현재 시·군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시·군 간 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되, '22년 개소당 10,000천원 기준, 미지원 시·군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추계결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1,992,548천원 ※연평균 398,509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615,748천원, 시·군비 376,8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72,642	387,801	404,132	410,641	417,332	1,992,548	
도 비	307,842	315,801	324,132	330,641	337,332	1,615,748	
시·군비	64,800	72,000	80,000	80,000	80,000	376,800	
세 출	372,642	387,801	404,132	410,641	417,332	1,992,548	
충청북도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도 100%)	291,642	297,801	304,132	310,641	317,332	1,521,548	
	인건비	219,965	226,124	232,455	238,964	245,655	1,163,163
	운영비	11,377	11,377	11,377	11,377	11,377	56,885
	사업비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301,500
시·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도20%, 시군80%)	81,000	90,000	100,000	100,000	100,000	471,000	